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509호
----------	-------

제출연월일 : 2002년 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위임사무를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골자

【기업지원과】

- 석탄산업법 개정(2001. 12. 31)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었던 석탄가공업 등록 관련 사무가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으로 됨에 따라 위임조항에서 삭제함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개정(2002. 2. 4 개정, 8. 5 시행)으로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등 기존 산업자원부 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됨에 따라, 충청북도사무의위임규칙에 의해 시군에 재위임했던 사무를 재위임조항에서 삭제하고 충청북도 사무의위임조례를 통해 시군에 위임함

【농산지원과】

-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2002. 1. 14 개정, 4. 15 시행)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었던 수리계의 등록 및 지도 감독 등 사무가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으로 됨에 따라 위임조항

에서 삭제함

- 농어촌정비법의 개정(2002. 1. 14 개정, 7. 15 시행)으로 토지 소유자가 시행하는 농업기반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등 기존 농림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으로 됨에 따라, 충청북도사무의 위임규칙을 통해 시군에 재위임했던 사무를 재위임조항에서 삭제하고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로써 시군에 위임함

【원예유통과】

- 양곡관리법의 개정(2002. 1. 14 개정, 7. 15 시행)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었던 양곡가공업의 등록 관련 사무가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으로 됨에 따라 위임조항에서 삭제함

【축산과】

- 수의사법의 개정(2001. 12. 31 개정, 2002. 7. 1 시행)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었던 동물병원 개설 신고 관련 사무가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으로 됨에 따라 위임조항에서 삭제함
- 어선법의 개정(2002. 1. 14 개정, 7. 15 시행)으로 시도지사의 권한 사항이었던 어선 건조 및 개조허가 관련 사무가 시장군수의 권한 사항으로 됨에 따라 위임조항에서 삭제함

□ 의안전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 발췌 : 별첨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 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 중 기업지원과 소관 제8호를 삭제하고, 제9호 내지 제21호를 각각 제8호 내지 제20호로 하며, 제21호 내지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령
기업지원과	21	○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2제4항
	22	○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동법 제18조제2항
	23	○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한 검사	동법 제21조제1항제4호
	24	○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범원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등	동법 제28조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 중 농산지원과 소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령
농산지원과	6	○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농업용수,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 (단, 2개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 가. 사업시행인가	농어촌정비법 제12조제1항, 제2항
		나. 사업시행인가 통지 및 고시	동법 제12조제2항
		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	동법 제12조제3항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원예유통과란을 삭제한다.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축산과 소관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13호 내지 제15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4호를 제1호로 하며, 제6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8호로 하고, 제16호 내지 제21호를 각각 제9호 내지 제14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권한위임사무중 기업지원과 소관 제21호 내지 제24호는 2002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농산지원과 소관 제6호 신설사무 및 원예유통과 소관 삭제사무는 각각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축산과 소관 삭제사무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는 2002년 7월 1일부터, 삭제사무 제13호 내지 제15호는 2002년 7월 15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별표 1】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기 업 지원과	1~7	(생 약)			1~7	(현행과 같음)	
	8	○ 석탄가공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석탄가공업의 등록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나. 석탄가공업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업무 다. 석탄가공업의 휴폐지 신고에 관한 업무 라. 석탄가공업의 영업 점지에 관한 업무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	석탄산업법 제17조 동법 제20조 제3항 동법 제22조 동법 제21조 제1항 동법 제45조 제3항		<삭 제>		
	9~21	(생 약)			8~20	(현행과 같음)	
		<신 설>			21	○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한 운행점지 명령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와 제4항	
		<신 설>			22	○ 승강기 운행점지 명령 동법 제18조 제2항	
		<신 설>			23	○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한 조사 동법 제21조 제1항제4호	
		<신 설>			24	○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및 벌원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등	동법 제28조

신 구 조 문 대 비 표

[별표 1]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농 산 지원과	1~5 (생 략)		농 산 지원과	1~5 (현행과 같음)			
	6 ○수리계 관련업무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 제43조 충청북도수리 계관리조례 제3조 동조례 제4조 제5조		6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농업용수,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관한 다음 사무(단,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 가. 사업시행인가			
	가.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	동조례 제6조		나. 사업시행인가 통지 및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12조제1항 제2항		
	나. 수리계 조직 및 등록	동조례 제10조		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	동법 제12조 제3항		
	다. 수리계 규약 제출	동조례 제11조					
	라. 수리계 예산 및 인력지원	동조례 제12조					
	마. 기반시설의 개·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 부과 및 납기인가						
	바. 부과금액 재조정 및 개결에 관한 사항						
	사.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 시달	동조례 제13조					
	아. 해산승인 및 기반 시설의 폐지관리자의 지정	동조례 제15조					
	자. 지도감독	동조례 제16조					
원 예 유통과	1 ○정부알곡 관리업무		원 예 유통과	<사 계>			
	가. 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알곡관리법 제19조제1항					
	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영위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동법 제36조 제1항					
	다. 양곡가공업에 대한 영업의 정지, 등록의 취소	동법 제21조 제1항					

신 구 조 문 대 비 표

【별표 1】

현 행				개 정 안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축산과	1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축산과		<삭 제>	
	2	동물병원의 휴업·폐업 신고의 수리	동법 제18조			<삭 제>	
	3	보고명령 및 검사등	동법 제31조			<삭 제>	
	4	(생 략)			1	(현행과 같음)	
	5	동물병원의 동물진료업 정지	동법 제33조			<삭 제>	
	6~12	(생 략)			2~8	(현행과 같음)	
	13	어선건조, 개조의 발주 허가 및 취소, 건조, 개조 등의 허가구분, 허가신청, 허가조건, 허가서 등의 재교부	어선법 제8조,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삭 제>	
	14	첫문에 관한 사항	동법 제38조			<삭 제>	
	15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 신청 처리	어선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삭 제>	
	16~ 21	(생 략)			9~14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석탄산업법】

제17조(석탄가공업의 등록등) ①석탄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석탄가공업자는 그 등록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승계) ①-②(생략)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승계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석탄가공업의 휴·폐지신고 등) 석탄가공업자가 그 석탄가공업을 폐지하거나 6월이상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등록의 취소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석탄가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때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유지의무에 위반하거나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45조(과태료) ①-②(생략)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 2(승강기의 특별관리) ①-③(생략)

④시·도지사는 특별관리대상 승강기가 이용자의 안전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운행정지명령) ①(생략)

②시·도지사는 승강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당해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삭제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3.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1조(검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승강기의 제조·보수 또는 관리등에 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영업소 등에서 대장·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3.(생 략)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관리주체

제28조(과태료) ①(생 략)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수리계)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관리지역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농업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하고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수리계는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계원으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수리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체납한 자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시장·군수에게 그 징수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리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시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의 징수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12조(사업시행인가 및 시행계획의 변경) ①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기반공사인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토지소유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인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의 범위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양곡관리법】

제19조(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영업정지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양곡가공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삭제<1999.1.21>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대상인 양곡가공업을 영위한 자
3.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수의사법】

제17조(개설) ①-②(생략)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휴업·폐업의 신고) 동물병원의 개설자는 동물진료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30일이내의 휴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보고 및 업무감독) ① 농림부장관은 수의사회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 그밖에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에 대하여

질병 진료상황과 가축방역 및 수의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상황·시설 또는 진료부 및 검안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3조(동물진료업의 정지) 시장·군수는 동물병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동물진료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개설신고를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무자격자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때
3.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 또는 제1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휴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시설기준에 미달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이선법】

제8조(건조·개조의 허가 등) ① 어선을 건조·개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이하 "건조·개조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생략)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조·개조허가를 함에 있어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받아 이를 건조·개조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조·개조 허가를 취소하거나 어선의 건조·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조·개조허가의 취소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등록의 말소

제53조 (과태료) ①(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53조(과태료) ①(생 략)

제53조(과태료) ①(생 략)